

(사)도로기술사회 정관

2014. 2. 11 제정
2019. 10. 12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도로기술사회” (이하 ‘본 법인’ 이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“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Road & Airport Engineers” (약자 ‘KAPRE’) 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법인은 도로 및 공항시설의 설계와 건설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전문가가 함께하여 오피니언 리더 그룹(Opinion Leader Group)의 역할을 담당하고,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, 국제 흐름 파악 및 선진국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의 도로 및 공항시설의 건설분야에 대한 미래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, 제1503호(수서동, 로즈데일빌딩)에 둔다.
- ② 본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, 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도로 및 공항시설 건설에 대한 조사 및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
2. 도로 및 공항시설 건설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정보교환
3. 관련분야 토론회,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
4. 회원의 기술용역업무 주도
5. 회원 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연대사업 추진
6. 기타 본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-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도로 및 공항기술사로서,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으로 한다.
- ② 회원의 자격과 구분, 입회절차 등 회원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정관의 기타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
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,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각 결의사항 이행
3. 연회비, 기타 분담금의 납부
4.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

제8조(회원의 탈퇴)

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징계 등)

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는 결정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구성)

①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: 1명
2. 수석 부회장 : 1명
3. 부회장 : 5명
4. 이사 : 50명 이내
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포함)
5. 감사 : 2명

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③ 본 법인의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은 2년 임기동안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 단,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한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자 중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출한다.

③ 위원회 및 사무국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
④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5.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

제14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업무를 대신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추인된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한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4.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·이사회 의 소집
- ⑥ 고문은 본 법인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.

제15조(임원의 해임)

- ① 임원이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해임 결의는 회원 4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6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18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년1회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.

제19조(총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)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. 단,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소집이 어려운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
제20조(의결권의 제한)

총회 의결사항이 회원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21조(회의록)
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 2인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 1. 회의일시 및 장소
 2. 총회 구성원 수 및 출석한 회원 수
 3. 의결사항
 4.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
- ② 의장은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22조(구성)

- ① 이사회는 본 법인의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.

제23조(소집)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다.
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3.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4. 기타 본 회 운영과 관련 중요사항이 발생할 때
- ② 이사회를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이사회에게 통지한다.

제24조(이사회 의결사항)

-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업무의 집행
 2. 사업계획의 운영
 3. 예산·결산서 작성
 4.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
 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6. 기타 주요사항
- ② 이사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및 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의결방법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26조(의결권의 제한)

이사회를 의결권 제한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7조(회의록)

이사회를 회의록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6 장 기 구

제28조(기 구)

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
2. 사무국

제29조(운영위원회 등)

- ① 본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고,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 등의 조직 및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30조(사무국)

- ① 본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무적 집행, 문서의 기록과 보전관리, 이사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, 사무국의 인사·복무·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7 장 자산 및 회계

제31조(기본재산 등)

-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, 보통재산은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③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제공,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④ 기본재산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본 법인의 운영재원은 회비, 수수료, 분담금, 후원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⑥ 본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- ⑦ 회비는 이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32조(회계연도)
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3조(예산 및 결산)

-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·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·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. 이 때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본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,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, 당해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- ③ 본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금으로 채우고,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적립시킨다.
- ④ 예산의 집행은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재한 후 사무국에서 집행하며,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.
- 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단,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재정

제34조(해산)

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

산한다.

제35조(재산의 귀속)

본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.

제36조(정관변경)

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7조(규칙제정)

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8조(기타)

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- ①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.
- ②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- ① 이 정관 시행 당일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②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.